

수신자 인천광역시본부 광역관할 소재 50인미만 사업장(건설업 제외)
(경유)

제목 인천광역시권 신규전략품목(화물차 후방카메라) 지원기준 변경 알림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을 기원합니다.
2. 2022년 하반기 추가된 「2022년 고위험개선 신규 전략품목(6종)」 중 화물차 후방카메라 품목의 변경된 보조지원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품목명	항목	지원기준	
		변경전	변경 후
화물차 후방카메라	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	○ (개인/법인)차량소유주 확인서류 - 자동차등록증	○ 법인차량 소유주 확인서류 추가 -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등록원부 ※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과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등록원부의 실소유주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	투자완료확인 소재지 추가	○ 신청서의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	○ 신청서의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또는 차량 차고지 등 투자완료 여부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넓은 장소 ※ 신청설비 설치소재지 외 장소에서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할 경우 공단과 사전 협의 필수. (원거리인 경우 거절될 수 있음)

붙임 화물차 후방카메라 보조지원기준 1부. 끝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장

대리

김혜빈

과장

이혜진

산업안전2부장

전결 11/04
한성주

협조자

시행 산업안전2부-3342 (2022. 11. 4.) 접수 ()

우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-1 (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) / <http://www.kosha.or.kr>

전화 032-510-0529 /전송 032-575-9979 / khb6095@kosha.or.kr / 공개

대표번호 052)703-0500 1644-4544 <http://www.kosha.or.kr> /고객참여

o 공단 업무 관련 인권침해, 갑질, 금품수수, 부정청탁 등 신고(전화 052-2458-114, 공단홈페이지-민원-신고센터)